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214,636,377	6,439,091
일반회계		184,613,746	5,538,412
특별회계		30,022,631	900,679
	기타특별회계	30,022,631	900,679
	의료급여기금	289,277	8,678
	주거환경개선사업	546,092	16,383
	주차장	28,840,829	865,225
	지하수관리	314,594	9,438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31,839	95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707,17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